



'23년도 「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」 사업 참여신청 안내

❖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제도란?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청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*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

*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·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활동으로서 뇌심혈관질환 예방, 직무스트레스 관리,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, 생활습관 개선 활동 등

※ 추진근거 :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<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33호>

1 신청 자격

■ **(신규신청)**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

■ **(연장신청)** 근로자 건강증진 선정 사업장으로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

※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되었던 '18~'19년 선정사업장의 경우 평가 유예해지 결정일('22.8.26.)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1년 이상 추진한 실적으로 연장평가 신청

2 신청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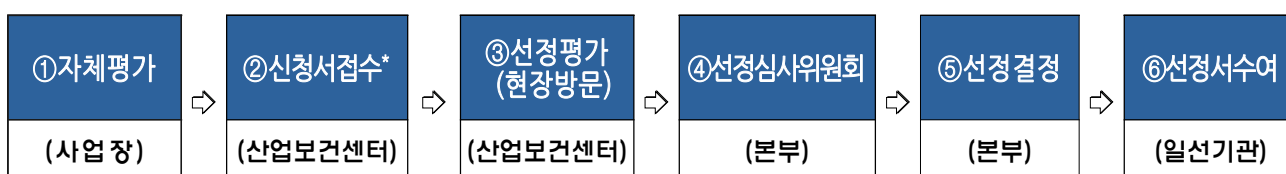
■ **(제출방법)** 지원신청서<별지1> 및 자체평가표<별지2>를 관할 공단 광역본부·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

■ **(제출기한)** 상반기 : 6.30까지, 하반기 : 11.30까지 제출

3 수수료 및 유효기간

■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며, 유효기간은 3년(매 3년 단위로 연장 가능)

4 선정 절차



5 선정평가

- **(평가방법)** 선정항목별 평가기준<별지3>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
- **(선정기준)**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, 각 평가항목점수(환산점수)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추천
- **(평가항목)** 체계구축, 인식수준, 조직문화, 건강증진활동, 환경관리, 프로그램 운영, 협력업체 관리 등 43개 항목(100인 미만 사업장은 38개 항목)

* 재해율(작업관련성 질환) 관리는 별도 평가

※ 선정 항목별 평가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공지에정

6 선정 사업장 혜택

- 선정된 사업장은 선정서 수여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 공고 등 홍보
-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

7 접수 및 문의처

- **(접수 및 문의처)** 공단 광역본부·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

접수처(기관명)	담당자	연락처	메일주소	관할지역
서울광역본부	임성국 과장	02-6711-2823	skyim09@kosha.or.kr	서울, 경기도 가평군, 강원도(철원군 제외)지역
부산광역본부	정휘진 과장	051-520-0614	for1days@kosha.or.kr	부산, 울산, 경상남도 지역
광주광역본부	김다운 과장	062-949-8754	woonii@kosha.or.kr	광주, 전라남·북도, 제주 지역
대구광역본부	백종혁 대리	053-609-0547	goor2806@kosha.or.kr	대구, 경상북도 지역
인천광역본부	조은진 과장	032-510-0567	joe@kosha.or.kr	인천, 경기도 부천, 김포, 의정부, 동두천, 구리, 남양주, 양주, 포천, 연천군, 고양, 파주, 철원군 지역
대전세종 광역본부	임현희 과장	042-620-5633	limhh@kosha.or.kr	대전, 세종, 충청남·북도 지역
경기지역본부	김진영 차장	031-259-7158	kjy1229@kosha.or.kr	경기도 수원, 화성, 용인, 평택, 오산, 안성, 성남, 이천, 여주군, 광주, 하남, 양평군, 안양, 과천, 의왕, 군포, 광명, 안산, 시흥 지역

※ 사업장 소재지(지역)에 따라 관할 공단 광역본부·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(안내사항)**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> 사업소개 > 산업보건 > 근로자 건강증진 >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